

	<b>학생활동지도비및지원비지급규정</b>	규정번호	3-6-11
		제정일자	2012.02.01.
		개정일자	2020.03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학생성공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학생활동 지도비 및 지원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도비) 학생활동을 지도하는 지도교수에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액을 지도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(학생활동지원비) ① 자율적이고 활기찬 대학문화 창출을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교비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공·일반동아리 활동
2. 학과 학술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학술제 및 졸업작품전
3. 교내 언론기관 활동
4. 학생회 활동
5.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행사

② 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지원비사용) 지원비는 사용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지급정지 및 환수) 지도비 및 지원비는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급정지 또는 환수한다.

1. 행사가 취소된 경우
2. 사용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
3. 기타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제6조(지급 및 정산) ① 지도비는 지도교수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지원비는 학과장·지도교수 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

③ 지원비 수령자는 행사 종료 후 결산서(영수증포함)를 행정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